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회칙

Korean Association for Psychodrama and Sociodrama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Korean Association for Psychodrama and Sociodrama)'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이하 사이코드라마 라함)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인간의 자발성과 창조성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양성 및 회원의 자질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본부는 **학회장이** 활동하는 지역의 소재지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회의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사이코드라마 학술 연구 및 교육
2. 학회지 및 소식지 발간
3. 학술대회 및 연구 발표
4.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양성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
 - 1) 정회원
 - ① 최소 200시간 이상 사이코드라마 교육을 받은자
 - ②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 ③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2) 준회원
정회원 외에 사이코드라마에 관심이 있는 자

2. 기관회원

공공기관 및 도서관, 단체 등으로 한다.

제6조(권리)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7조(임무)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정지)

1.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의 경우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관리가 자
동으로 정지된다.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
계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회의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명예회장 약간 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1명
4. 감사 2명
5. 총무이사 1명
6. 지부학회장
7. 각 위원회 위원장

제10조(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지부학회장은 지부학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인준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1.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모든 재정 업무를 감사하고, 정기총회 때 이를 보고한다.
5. 총무이사는 본 회의 회원관리 및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6. 지부학회장은 각 지부를 총괄한다.
7. 각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일을 총괄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장 총 회

제13조(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4조(개최)

정기총회는 매년 1월로 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사항)

임원 선출, 회칙 변경, 예산 및 결산 승인, 기타 중요사항

제16조(정족수)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불참시 위임장으로 제출한다.)

제6장 위원회

제17조(위원회)

본 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학술위원회
2. 교육연수위원회
3. 윤리위원회
4. 자격관리위원회
5. 편집위원회
6. 대외협력위원회
7. 특별분과위원회

제18조(위원회의 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각 위원장의 선출은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0조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역할)

1. 학술위원회 : 학술논문상, 저술상, 사이코드라마 전문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기획 및 간행, 외국서적 번역, 학술 세미나 기획 및 실행, 사이코드라마 관련 논문작성을 위한 콜로키움 운영
2. 교육연수위원회 : 월레사이코드라마워크숍 진행 및 관련 업무, 사이코드라마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사이코드라마 관련 교육 교재 개발
3. 윤리위원회 : 회원의 윤리의식 고취에 관한 제반 사항
4. 자격관리위원회 : 전문가 자격증 관련 업무, 회원의 자격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5. 편집위원회 : 학회지 기획 및 편집, 학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 관련 업무
6. 대외협력위원회 : 유관 단체와의 유대 및 정보 교환 업무, 회원 모집 및 지부학회 설립 및 관리 업무, 학회 내 신설 자격증의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
7. 특별분과위원회 : 아동·청소년·가족, 비블리오, 트라우마 및 중독, 기업, 역할극 상담 및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역할극 활성화 프로그램 구성 및 수행, 회원의 다양한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훈련

제7장 운영위원회

제22조(구성)

회장, 부회장, 총무, 각 위원회 위원장, 각 지부회장

제23조 (역할)

회원 자격을 심의하는 등 학회 의결기관의 역할을 한다.

제24조(의결)

운영위원의 2/3의 출석으로 하고,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을 할 수 있다.)

제25조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장 지부학회

본회는 지역에 따라 지부학회를 둘 수 있다.

1. 지부학회의 명칭은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00지부학회'로 한다.
2. 지부학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지부학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부학회에서 정한다.
4. 지부학회의 회원자격은 모학회의 회원자격기준에 준하도록 한다.
5. 지부학회의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 및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정기총회에서는 구두와 서면으로 1년간의 지부학회 활동과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
6. 모학회는 지부학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9장 자격관리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자격규정을 따로 두어 운영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0장 재 정

제26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입회비, 연회비, 보조금, 발전기금 및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 정회원과 준회원 이만원, 기관회원 오만원
2. 연회비 :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은 오만원, 정회원 삼만원, 준회원 이만원으로 하며, 기관회원은 오만원으로 한다.
3. 학회발전기금으로 일백만원 이상 납부한 회원은 평생 연회비가 면제된다.

제2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2.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에 따라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2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
4. 본 학회에는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5. 본 회칙은 2004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6. 본 회칙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변경은 201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